

# 2020회계연도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0년 10월 28일(수요일) 14:00 ~ 14:50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규혁, 유희철, 박성수, 조재영, 이동현, 이인재, 이문선, 이원석, 이민규  
위원

○ 불참자 : 최백렬, 윤영상, 홍철운, 김중기, 송완상, 고관호 위원

○ 상정안건

-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 대학회계직원 임금인상안

간 사 :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  
(이경환) 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제1안건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  
안건 「2020년 대학회계직원 임금인상안」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양규혁)

위원장 :

(양규혁)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15명 중 총 9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  
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  
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 중 「2020회계  
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0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김명숙)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  
(양규혁)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서 의사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양규혁)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종  
(양규혁) 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표  
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혁) 전원 거수하여 주셨기 때문에 반대 위원은 없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9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대학회계직원 임금인상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0년 대학회계직원 임금인상안」에 대하여 설명함. (장홍수)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혁)

위 원 : 직책수당 '나'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선임 조리원인데 혹시 대학회계직원 중에 식당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지? 학생회관 때문에 근무하시는 건지? 대학에 있습니까? 이 직책이?

인사팀장 : 지금 일반직 대학회계직에는 없고요. 수입대체직원 생활관에 있습니다. 생활관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장홍수)

위 원 : 생활관을 BTL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식당은 대학회계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 고 있습니까? (유희철)

인사팀장 : 식당은 공무원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홍수)

위 원 : 예, 알겠습니다.

(유희철)

위원장 : 지금 학교 전체 대학회계직이 312명이라고 아까..... 다 합해서 312명인가요?

(양규혁)

인사팀장 : 수입대체인 생활관하고 언어교육부, 평생교육원 제외하고 312명입니다.

(장홍수)

위원장 : 그러면 거기까지 다 합하면은 400명가까이 되나요?

(양규혁)

인사팀장 : 350명 정도 됩니다.

(장홍수)

위 원 : 수입대체직원들은 이것에 준해서 따로 결정이 되나요?

(이동현)

인사팀장 : 따로 결정은 안하고요. 그냥 이것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장홍수)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규혁)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표결에 들어가 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좋겠습니까? (양규혁)

위원들 : 네.

위원장 :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혁) 다.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 9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으로 기타논의사항이 있겠습니까. 지난 2020학년도 교육·연구·학생지도 (양규혁) 비 지급기준안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급여차감에 대한 법적해석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까. 이상노 기획예산부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부처장: 기획예산부처장 이상노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상노) 시작된 계기는 박찬대 의원이 부산대 감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 미제출자 환수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환수대상액이 없는 대학도 관련 규정을 개선내용으로 개정해야 되고 또한 제도개선 및 환수실적은 '20년 교연비 지급계획 협의와 연계해서 우리의 교연비 지급이 상당부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늦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른 대학도 공동모의를 해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요 교육부에서 교연비 관련해서 안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배경에서는 '19년 국정감사 시 박찬대 의원이 부산대 교내 연구비 지급에 대한 연구결과물 미제출에 따른 환수실적 부진을 지적했고요. 이에 따라서 환수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에 보시면은 세 번째 교내 연구비 관련 제도개선(안)을 만들도록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연구결과물 미제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면 부산대가 제일 많고 올해 파악되어 있는 금액은 우리학교가 600만 원 정도로 제일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쪽에 보시면은 연구비 환수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교육부에서 파악하기로는 두 번째 보시면 연구비 회수 규정이 미흡하다. 그래서 연구비 회수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거하고요. 퇴직자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미반납하고 퇴직을 하더라도 환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안으로 제시된 것이 연구비 반납완료 또는 결과물 제출시 까지 여기에 보시면 모든 교내 연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택영역에 한해서만 연구비지급을 제한했는데요. 모든이 들어감으로써 교연비의 연구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급여공제를 포함한 반납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연구비 회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이 있습니다. 퇴직자 관리 강화 측면에서 퇴직 전 수행하는 마지막 연구과제는 연구비 일부를 집행보류하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한 후에 잔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 할 때도 제출여부 의무이행사항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사항에서 제도개선 및 환수실적은 '20년 교연비 지급계획과 연계해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연비를 안 해준 상태로 있습니다.

기획예산부처장: 세 번째 보시면 대학별로 환수액이 쭉 나와 있고요. 우리 대학은 600만 원 정도  
(이상노) 있습니다. 또 다음 쪽에 보시면 거점국립대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거점국립대는 거의 다 기존 선택영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연비에 연구영역까지 제한 가능하면서 제도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쪽에는 이인재위원님께서 제출해주신 내용인 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급여차감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교연비 관련해서 저희는 학내에 있는 변호사님하고 노무사님의 의견을 들어서 적법하다고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무사님과 변호사님이 모셔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설명을 계속 듣기로 할까요?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규혁)

노무사 : 의견서를 작성했는데요. 기존에 위원님께서 적어주신 판례를 보면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따라서 상계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 언급한대로 조정적 상대는 가능하다.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만 상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제가 의견서 쓴 것을 보시면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입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의견서 써놓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교육연구비 회수와 관련하여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런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판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상계금지인데 반납동의서를 받는 방식이라고, 한편 상계계약으로 봐야하지 않나 그래서 공무원의 공공성이라든가 특수관계등을 고려하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서를 적었습니다.

변호사 : 제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취지인데 전 회의에서 이인재 교수님께서 지적하신바 같이 근로기준법상에 임금 같은 경우는 전액지급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유를 들어 임금을 상계해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기에 논의가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구비를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환을 나의 월급에서 차감해도 괜찮다 이런 취지의 반납동의서라면 그것은 단순히 학교 측에서 월급에서 반환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에 상계를 하기 위한 법적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 등에서 합의에 의해서 임금이라든지 퇴직금 관련해서 차감할 내용들이 적법해서 원고의 임금청구를 기각한 사건들을 몇 가지를 제가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들 간에 합의에 의하더라도 대법원은 연구비 수령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그런 합의를 인정하는 취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반납동의서 정구가 이러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해당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 검토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연구비 반납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학교나 연구비를 제공하는 주체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관련 법 규정과 법령에 의거하더라도 우리 국립대학교의 장은 여러 가지 환수가 발생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환수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보았을 때 자유로운 의사에 대해서 연구비 반납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부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것을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연구비를 수령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논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양규혁)

위 원 : 저는 논의사항은 아니고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사실은 노동법 전공하시는 교수님들하고도 의견교환이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도 제가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동의서는 받을 수 있으나 동의서 받는데도 집행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굳이 이런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냐는 제 주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했듯이 동의서 받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동의서대로 집행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볼 여지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법에서 어긋나는 그러니까 실행할 수 없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제 주요 주장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부처장님 혹시 부산대하고 충남대에서 무슨 일이 (양규혁)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설명해주실수 있겠어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죠?

기획예산부처장 : 네 자료 두 번째 보시면 국정감사에서 부산대와 충남대를 감사했는데요. 부산대 (이상노) 와 충남대가 그 당시 1,390백만 원으로 13억 정도 되는데요. 국립대학 미환수액 중 전체의 81%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환수를 안 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교수들이 퇴직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데 부산대에서는 (양규혁) 그런 소문이 돌았던가 봐요.

기획예산부처장 : 아쉽게도 저희도 지금 환수를 안 하시고 퇴임을 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상노)

위 원 : 이런 경우가 주로 연구비 신청을 논문을 쓰겠다고 하고서 신청 받은 경우에 해 (이인재) 당되죠?

기획예산부처장 : 맞습니다.

(이상노)

위원장 : 논문당 연구비는 부산대하고 충남대하고 차이가 있나요? 숫자에 대비해서 정확 (양규혁) 히 모르겠는데 충남대는 과제수가 훨씬 많은데 금액은 비슷해서요.

기획예산부처장: 각 대학별로 교연비 포맷이 다릅니다. 지급방식도 다르고요. 예전에 전남대는 연  
(이상노) 구영역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학생지도 이렇게 없고요. 연구만 있고  
부산대 같은 경우는 거기도 거의 학술트랙 비슷하게 있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  
이가 있어서 비교가 1:1로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위 원 :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구기반조성비 같은 경우도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내시겠다  
(조재영) 고 하시면 1,00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위 원 : 근데 연구기반조성비가 사실은 만들어진지 꽤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인재) 논문작성을 좀 도와서 논문편수를 좀 늘려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논문을 쓰겠다고 연구를 시작하는 건데 사실은  
연구자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조금 무리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  
를 들어서 이것을 미리 선납하고 논문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쓰  
고 나서 그런 우리가 대부분의 재주들이 논문을 쓰고나서 인센티브 성격으  
로 받는 그런 연구비잖아요? 교연비 내에 있는 연구비들이? 근데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선납금을 주지 않고 인센티브 성으로 지  
급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 원 :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아주 열  
(조재영) 심히 연구 활동을 하셨는데 논문이 출판이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성실  
실패의 경우를 적용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시행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연구자분들이 어려움을 알고 논문을  
출판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 과정에서 실제 연구를 열심히 하셨든 증빙  
실제 논문을 투고하셨던 내용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봐가지고 성실실패의 경우는  
좀 구제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 원 : 네 연구노트라든가 그런 트랙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는 것도 좋은 생  
(이인재) 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양규혁)

기획예산부처장: 저희가 제안하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환수만 한다고  
(이상노) 돼있고요.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환수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저희들한테 한 3개월 유예기간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  
른 대학도 3개월에서 6개월 지난 후에 환수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  
습니다.


위 원 : 근데 그 환수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없는 게 아니죠. 왜냐면 교연  
(이동현) 비가 지급한 그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이것을 반환하거나 연구결  
과물을 내지 않으면 당연히 교연비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라고 이  
미 우리가 특정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기획예산부처장: 선급금을 드리고 있어서요.

(이상노)

위원장 : 학회에 따라서 투고부터 등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가고 일괄적  
(양규혁) 으로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 같네요.

위 원 : 그래서 현재는 저희 대학은 교수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잘 관리가  
(조재영)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실적이 양호한 편인대요. 현재는  
저희가 3일 거쳐가지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났으니 저희  
가 한 보통 6개월을 기다려 드리거든요. 보통 1년 정도 연구를 하시고 그 안  
에 출판이 안됐을 때 보통 6개월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퇴직을  
하셨거나 또는 이제 2~3년, 3~4년 동안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충 기한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짧으면 3개월 정도 되겠지만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해외에서는 쉽게 안 해주니까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시간을 주시면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저희가 환수 할 수 있는 조  
치를 취하도록 좀 고려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 근데 이런 조건들이 왜 나오는가를 생각해주시면 이 조건에 우리가 돈을 받고  
(이인재) 서 교연비를 받고서 논문을 쓰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했듯이 성실실패에도 만약에 감안해주시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트랙이 일반트랙으로 되어있으니 만약에 퇴직을 앞두신 분  
들한테 일반트랙이나 아니면 다른 제도 논문 말고 다른 제도를 추천해서 하시  
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지를 환수할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드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교연비가 연구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봉급이요, 봉급이었고  
지금도 교육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봉급이 아니라면 봉급체계에서 교수가 받는 불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 물론 고민은 되시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위원장 : 국립대들이 다 보조를 다 같이 맞추셔서 나아가는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그때  
(양규혁) 또 논의하게 되겠죠.

위 원 : 저희가 성실실패에 제안한 것도 제가 최초거든요. 제가 국립대 산단장하면서  
(조재영)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교육부에 질의를 했었고요. 근데 아직 명확한 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산단이 좀 선동적으로 제가 그것을 대응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 다른 기타 논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타논의를 마치겠  
(양규혁) 습니다. 다음으로 회의록 간서명대표자 3인 선출이 있겠습니다. 본 회의를 마치  
기 전에 기타 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  
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회계연도 제3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은 유희철, 이인재,  
이문선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부처장: 회의록 정리를 위해서요. 아까 급여공제 부분이 환수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이상노) 되신 건가요?

위원장 : 이것은 그냥 기타 보고사항으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좀 그렇

(양규혁) 지 않는가요?

위 원 : 환수 가능한 것은 법적인 문제라서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재) 다. 그런 결정도 안했고요.

위원장 : 말하자면 논의 한 것을 보고하고 논의 한 것으로 마쳐야지. 안건에 안 올라와 있거

(양규혁) 든요? 그래서 어떤 손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재정위원

회에서 보고하고 논의했다로 표시를 해주시죠. 어떤 결정한 것이 필요한가요?

기획예산부처장: 환수는 대부분 지금 연구지원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환

(이상노) 수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환수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위 원 : 연구 신청할 때 환수에 대한 동의서를 교수님들께서 다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유희철) 환수 사항이 되어서 환수를 할 것은 그 다음에 동의서를 쓴대대로 조치를 할 것인

지는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해

야 되고요. 저희는 그때 이인재위원님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도 하고 검토고 해달라고 하셔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

지만 이렇게 동의서를 쓰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노무사

님이나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서 이인재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타 검

토도 하고 논의도 한 것이지 동의를 해서 썼기 때문에 환수가 가능하고 부서에서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라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그리고 그 규정을 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규혁)

위 원 : 그것은 저희 연구지원부에서 규정을 제정해가지고 규심위에 올려가지고

(조재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양규혁)

기획예산부처장: 알겠습니다.

(이상노)

위 원 : 제가 한다면 저는 소송을 할 텐데요. 제가 확실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이인재)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룰을 만들어

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환수한다는 시도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행정력 낭비 같습니다. 그냥 명문상으로 두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교육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것을 실질적

으로 규정을 적용을 해서 뭘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요. 그런 결정을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

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 원 : 여기에 규정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환수조

(이동헌) 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위 원 :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심의대상으로 올려가지고 와서 하셔야 될 것  
(박성수) 같습니다. 규정을 통과를 하셔가지고 재정위원회 관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논의를 하고요. 하위 규정 위임 받은 집행권 행정명령처럼 집행부에  
위임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심의를 안 해도 되고요.

위원장 : 네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양규혁)

기획예산부처장 : 거국련에서 교수회 연합회에서 단체적으로 이런 이의제기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상노) 바람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교연비하고 연동을 시키다보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어떤 다른 교수님들은 반납동의서 자기는 냈는데 왜 교연비를 안주냐 저희한테 따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연기하기도 못하고 그걸 집행하기도 뭣해서 다른 대  
학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교수회 연합회에서 한번 같이 공동대  
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 국교련에서 관심사항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국교련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이인재) 나 이런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협조하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차후에 국교련에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공신력 있게 다룰 거라고 생각합  
니다.

위원장 : 우리가 저번에 이 문제를 다룰 때도 딱 시간이 닳쳐가지고 지급이 늦어질까 봐서  
(양규혁) 오래 다루지를 못했잖아요? 미리 준비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서명하  
실 3명 대표위원으로 다 결정이 되셨나요?

위원들 : 조재영, 이동현, 이문선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조재영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이문선  
(양규혁) 위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 원 : 그리고 학생회장 임기가 언제까지죠?

(박성수)

위 원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원석)

위 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는 건가요?

(박성수)

위 원 : 네

(이원석)

위원장 : 벌써 그렇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발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양규혁)

위 원 : 인사말씀

(이원석)

위원장 :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양규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양규혁)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 사 :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  
(이경환) 습니다.

작성일 : 2020. 11. 6.(금)

위원장 : 양규혁   
간사 : 이경환   
기록자 : 김선웅 